

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도9867 판결 [횡령]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건	2021도9867 횡령
피고인	A
상고인	피고인
변호인	변호사 오치석
원심판결	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노751 판결
판결선고	2021. 12. 16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.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,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횡령죄의 위탁관계 및 보관자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

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재형(재판장) 노정희(주심) 안철상 이흥구